

# 2025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 매체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미술비평문 생성 및 비평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공모개요

- (공모명) 2025 한국미술 비평지원
- (공모기간) 2025. 1. 23. ~ 2025. 2. 12., 15:00까지
- (사업규모) 총 186백만원

## □ 공모내용

- (지원대상) 미술 비평가와 협업이 가능한 시각예술 전문매체
  - (오프라인 매체) 최근 3년간 과월호 10권 이상 발행 매체
  - (온라인 매체) 설립 후 1년 이상, 시각예술 관련 콘텐츠 20편 이상 정기적 게재 발행 매체
    - \* 1인 미디어 및 개인 블로그 등 운영자 본인이 필자로 활동하는 곳은 제외
- (지원규모) 총 186백만 원
  - 매체 4개 내외, 매체당 최대 3천만 원
  - \* 영문판 특별호 발행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신청 가능
    - 예) 비평문 게재 + 비평 관련 행사 개최 지원 시 3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비평문 게재 + 비평 관련 행사 개최 + 영문판 특별호 발행 지원 시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비평문화 확산을 위한 시각예술 매체 활동비 지원
  - 비평문 게재 지원
    - 원고료(200자 원고지 1매당 25천 원~30천 원 산출, 최대 50매까지 가능)
    - \* 비평가의 리서치비용 및 제반경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
    - 매체 게재비(건당 정액 35만원)
  - 비평 관련 세미나 등 행사 개최 지원
    - 행사 개최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영문판 특별호 발행 지원(\*선택한 단체에 한하여 지원)
    - 영문 번역비 및 인쇄비, 저작권료 등
- (지원조건)
  - 비평문은 한국 국적의 작가 및 한국 작가의 전시, 주제에 한함

- 비평가 1인당 비평문 3건 이상 배정 불가
  - \* 비평가 1인이 특정 매체에서 본 지원사업을 통해 3건의 비평원고를 배정받은 경우, 타 매체에서는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운영비가 지원되는 행사(세미나)에는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된 비평문 또는 비평가 포함 필수
- 게재지면 및 웹페이지 건별 지원 문구 표기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근/비상근 인력은 사례비 지급 불가
  -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상근인력의 경우, 타 매체의 비평원고 참여 불가

## □ 주요사항

|                    |   |
|--------------------|---|
| <b>지원 불가 항목</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li> <li>•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li> <li>• 부대비비용 :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li> <li>•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li> <li>•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li> </ul>   |
| <b>지원 자격 제외 대상</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li> <li>• 한국 사업자등록 번호를 소지하였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li> <li>•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li> <li>• <b>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b></li> <li>•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등)</li> <li>•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등)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li> <li>•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li> <li>• 기획재정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li> <li>•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제7조제4항(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단체</li> <li>•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li> <li>•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참여 비평가 포함)</li> <li>•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참여 비평가 포함)</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li> <li>•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li> <li>•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li> </ul> |

## □ 선정단체 의무사항(필독)

###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방지 조치(사업 운영인력 전원 해당)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해당 양식)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②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③ 모든 홍보물·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④ 지원사업을 통해 게재된 지면 또는 웹페이지에 건별 지원 문구 기재

※ 예시) “이 기사(원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

### 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필수

※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

### ⑥ 선정단체 대상 사전 워크숍·성과 공유회, 회계교육 참석

### ⑦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 유의사항

- 지원 신청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을 따라야 함
- 심의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가 변경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게 있음
- 비평문의 저작권 관련 논란(표절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에 지출된 원고료 및 게재료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및 배우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선정 제외 대상에는 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참여 비평가 및 작가도 포함함
-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평가 및 작가가

-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
-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비평사례비 지급 불가
-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을 계획해야 하며 부가세는 단체에서 직접 부담해야 함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정산 및 실적 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부 확정 이후 사업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됨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지원금) 집행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내에서만 가능
  - 교부신청은 행사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
-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에 따라 작가사례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례비를 구분하여야 함
- 공모요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사업운영 가이드,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 공모접수

- (접수기간) 2025. 1. 23.(목) ~ 2025. 2. 12.(수), 15:00까지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
  - ※공모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를 권장함
  - ※반드시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방법) 전자파일 형태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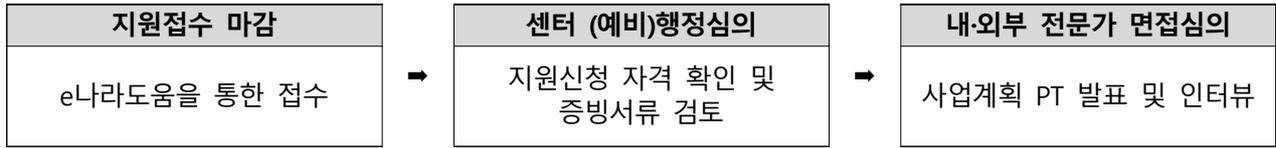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서류제출         |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사업신청 제출<br>① [필수] 지원신청서(센터 지정서식)<br>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br>(jpg 또는 pdf 파일) | •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 제출<br>•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공모현황<br>>공모명검색(한국미술 비평지원)<br>> 신청서작성 |
| 면접심의<br>서류제출 | PT 자료   | •행정심의 이후 면접심의 대상단체에<br>한하여 이메일 제출                                       |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

-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 필수 및 공인인증서 필요
- ※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개인회원 가입 불가**
- ※ 본 지원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
- ※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 심의개요

- (심의방법)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행정 및 면접심의
- (심의절차)



\* 필요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심의 진행 가능

## ○ (심의기준)

| 심의지표                | 가중치 | 세부심의 내용  |
|---------------------|-----|--|
| 목적의 부합성 및 적절성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사업취지)의 이해도(10)</li> <li>○ 계획, 구성, 성과 등 공모사업 목적과의 부합성(10)</li> </ul>  |
| 지원단체의 전문성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을 위한 매체 전문성과 적절성(10)</li> <li>○ 사업 수행을 위한 내·외부 인력 배치와 활용의 적절성(10)</li> </ul>   |
| 추진 계획의 구체성<br>및 차별성 |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합리성(10)</li> <li>○ 비평문 기획의 참신성 및 비평가 매칭의 적절성(10)</li> <li>○ 예산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10)</li> <li>○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10)</li> </ul> |
| 기대효과                |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에 대한 지원 효과(10)</li> <li>○ 해당 사업성과에 대한 파급효과(10)</li> </ul>   |

- (심의일정) 2월 3~4주 예정
- (선정결과)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

## □ 관련문의

- 사업 관련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
  - (이메일) [hymeis9@gokams.or.kr](mailto:hymeis9@gokams.or.kr)
  - ※ 공모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이용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